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5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32724 압류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환석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가 2021.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5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1. 7.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시 C 소재 6층 숙박시설 중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2020. 3. 17.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6. 23.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1,310,500원을 부과하였고, 2021. 7. 19. 원고가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1,349,690원(= 2020년 귀속 재산세 1,310,500원 + 가산금 39,190원, 이하 '이 사건 재산세'라 한다)을 체납액으로 하여 원고 고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재산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의무만 있으므로, 원고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5

1) 민법 제998조의2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22조에 따라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소유함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즉 '상속에 관한 비용' 중 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민법 제998조의2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건 재산세와 같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조세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2) 이 사건 재산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재산세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변제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산세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으로써 이 사건 재산세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재산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민법상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비롯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5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사건 재산세를 상속비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한정승인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정승인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1-15

별지)

목 록

압류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 : L은행, M은행, N은행, O은행, P은행, Q은행, 우정사업본부 압류채권 :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 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다만,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으로써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① 보통예금 ② 저축예금 ③ 당좌예금 ④ 정기예금 ⑤ 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①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

<끝>